



제439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현장조사비 지급 명시〉

■ 박희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879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희승의원 등 19인
2. 발 의 일 : 2025. 11. 4.
3. 회 부 일 : 2025. 1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비용법은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 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고 되어있음에도, 하위 규정인 민사소송비용규칙에서 일정한 지급기준액을 설정하고, 일당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법원별로 산재되어 있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2008년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면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거보다 현장검증비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못 미쳐 사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임.

현장검증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일 수 있고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으나 추가 업무 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증거조사를 위한 출장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조사비를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재판을 도모하고, 사법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현장조사비를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구되는 실비액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第5條(法官등의 日當・旅費) ① 法官과 法院書記의 證據調査에 요하는 日當・旅費와 <u>宿泊料</u> 는 實費額에 의한다.	第5條(法官등의 日當・旅費) ① ----- ----- ----- <u>宿泊料 및 현장조사비</u> 는-----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등의 기준에 따라 실비액을 지급하고 있음.¹⁾

개정안은 실비액에 의하도록 하는 대상에 현장조사비를 추가하여

1) 「민사소송비용법」 제5조(법관등의 일당·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는 실비액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비용규칙」 제4조(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여비, 숙박료) ①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와 숙박료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다만, 물가변동 기타의 사정으로 위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같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법관,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증거조사의 방법 중 현장검증의 비용보전을 명시함으로써 이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장검증은 법관 등이 직접 현장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데, 사건기록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장을 조사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법관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봄.

다만, 현장조사비 지급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그에 따른 예산집행액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장조사의 필요성과 소요되는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61